



## 2002년도 PL지원사업 추진계획

중소기업청은 2002년 7월 1일 PL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추진능력을 배양하고 PL분쟁 발생시 이를 원활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'2002년 중소기업 PL대응 지원 방안' 을 마련, 발표했다. 이에 중기청이 발표한 'PL지원 방안' 을 본란에 소개한다

### □ PL대책 추진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

#### ○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PL대응활동추진을 활성화하기위해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홍보

#### ○ 추진계획 및 지원시기

- PL홍보 리플렛 제작·배포(7만부) : '02. 1월부터
- PL대응방안 책자제작·배포(5만부) : '02. 2월부터
- 사내교육용 비디오 제작·배포(2만개) : '02. 7월부터

#### ○ 배포처 : 각 지방중소기업청

### □ 업종별 PL대응매뉴얼 개발·보급

#### ○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이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위해 업종별 특성에 부합되는 PL대응 매뉴얼을 개발·보급

#### ○ 개발분야

- 전기(가전) 제품, 화학제품 등 PL위험이 높은분야

#### ○ 추진방법 및 지원시기

- 전문기관의 용역사업(6개월)으로 개발, 2002. 10월 중 보급예정

### □ 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

#### ○ 사업개요



-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PL업무추진능력 배양
- 지원대상
  - 중소기업체의 직원(업체당 1인) 3,000여명
  - 중소기업지원기관의 PL담당직원(기관당 1인) 100여명
- 지원내용
  - 교육수강료의 50%를 정부예산으로 지원 (중소기업지원기관의 PL상담요원은 무료)
- 추진방법 및 지원시기
  -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지원(2002. 3월~11월)

**□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·운영**

- 사업개요
  - 중소기업이 신속·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PL분쟁을 처리토록 하기위해 민간주도의 PL분쟁조정기구를 설치·운영
- 설치·운영기관
  -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(PL사업팀)
- 운영방법
  - 변호사, 손해사정인, 시험·연구전문가 등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근 독립적기구로 운영
  - 평소에는 실무직원 1~2명이 상주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
- 지원내용
  - 중소기업간, 대기업과 중소기업간, 중소기업과 소비자간의 PL분쟁을 저렴한 비용(실비)으로 해결토록 지원
- 지원시기
  - '02. 1~6월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7월부터 지원

**□ PL컨설팅지원**

- 사업개요
  - 중소기업의 PL대응시스템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희망업체를 유사업종별로 묶어 PL컨설팅



팅을 지원

- 지원대상
  - 단체 PL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-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
  - PL컨설팅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업체당 1,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65%를 지원 (2002. 2월부터)

**□ 시험·연구설비 개방**

- 사업개요
  -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의 안전성 시험 등 PL대비를 위해 시험·연구설비 사용을 희망시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·연구장비를 무료사용토록 개방
-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
  - 2002. 1월부터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시 지원

**□ PL대책 추진시 정책자금 지원우대**

- 사업개요
  - 중소기업이 PL대책추진을 위해 생산·가공시설개체, 시험·검사설비도입, 설계·제조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신청시 우대(가점부여)지원
- 지원대상
  - PL전문기양성교육 또는 PL컨설팅을 받은 업체
- 대상자금
  -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, 경영안정자금, 중소·벤처창업자금,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
- 지원신청기관
  -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
  - 각 시·도 기업지원과
- 지원시기 : 2002. 1월부터

**□ 제조물책임(PL)정보제공 강화**



- 사업개요
  - 중소기업이 각종 PL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의해 각종 PL정보를 제공
- 정보제공내용
  - PL법해설, 유사제도와외의 비교, 기업의 PL대응방안, 외국의 제조물책임법, PL관련판례, PL보험안내 등
- 지원기관 및 지원시기
  - 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 : 2002. 1월 부터
  - 중소기업중앙회(www.plkorea.com) : 2002. 6월 부터

**□ PL단체보험제도의 지속적운영**

- 사업개요
  - PL사고발생으로 인한 경영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손해배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PL단체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
- 지원대상
  - 제조, 판매, 수입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지원기관
  -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사업팀
- 지원내용
  - PL보험가입비 할인(20~30%)지원

**□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강구**

- 사업개요
  - 업계, 학계, 유관기관 등으로 PL대책협의회를 구성·운영
  -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를 조사하여 시책에 반영
- 추진계획
  - PL대책협의회 개최 : 반기 1회
  - PL대응실태조사 : '02. 3월중 2,000개 업체조사예정(중진공)



< 참고 >

**제조물책임(PL)법의 주요내용**

(법률 제6109호 전문8조, '99.12.16 제정, 2000.1.12 공포, 2002.7.1 시행)

□ **제조물책임의 개념**

-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·판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

< **제조물 결함의 종류** >

- 제조상의 결함 :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발생한 결함
- 설계상의 결함 :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함
- 표시상의 결함 : 경고사항, 취급방법 등을 불합리하게 표시한 경우
-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

□ **주요골자**

- 목 적 :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모
- 적용대상 :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(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포함)
- 손해배상책임자 : 제조물의 제조·가공 또는 공급자(수입업자 등)
- 손해배상범위 :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정신적·물질적 손해
- 면책사유
  - 제조물 공급시의 과학·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
  - 법령이 정하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
  - 원재료 및 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·제작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
- 연대책임 : 동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
-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
  - 손해발생 및 손해 배상책임자를 안날로부터 3년 경과시
  -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시